

수원지방법원 2020. 8. 27 선고 2019나6341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8. 27 선고 2019나63416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3. 27 선고 2018가단2063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길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주

변론 종결2020. 7. 2.

판결 선고2020. 8. 27.

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3. 27. 선고 2018가단20636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4,500,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H은 2014. 1. 3. 피고 소유인 인천 옹진군 C 외 4필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J으로부터 가설재(아시바)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고, 그 무렵 거래처인 K으로부터 단관 등 가설재(이하 '이 사건 가설재'라 한다)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. H은 2014. 7.경 K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매수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4. 8. 12. 원고, L, M, N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의 수목, 건물, 관련 부속물 일체를 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2015. 1. 7. 이후 일자불상경 현장소장 O에게 건물신축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가설재를 처분하여 경비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여 이 사건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게 하였다.

라. H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2411호로 원고, 피고, L, M 및 N을 상대로, 주위적으로 피고가 H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H의 동의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,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설재를 매각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, L, M 및 N(이하 '원고 등'이라 한다)이 이 사건 가설재의 반환을 거부하였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

소를 제기하였다.

마. H은 2017. 8. 23.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,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나644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. 5. 25.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다24291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. 9. 13.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(이하 '선행 소송'이라 한다).

주문: 원고는 H에게 44,500,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

이유: ① 이 사건 가설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임의로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 ②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H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H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설재의 시가 상당액인 44,500,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호증, 을 제50, 5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매매계약상 '관련 부속물 일체'는 이 사건 가설재를 의미한다.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의 미완성 건물과 이 사건 가설재를 일체로 매수하였는데 선행 소송의 확정으로 원고가 H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 가액 상당이 포함된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가 그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.

2) 그러나 이 사건 가설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앞서 든 증거, 을 제17,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가 2014. 1.경 J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설재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가설재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였고, 그럼에도 J은 이 사건 가설재 설치 공사를 강행한 점, ② 원고의 대리인 P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'만약 이 사건 가설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고철 값을 주든지, 자기들이 어차피 공사를 할 것이니 알아서 처리하겠다'는 취지로 말하였는바, 이는 이 사건 가설재를 매수한 당사자가 취할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, ③ 이 사건 가설재는 건물 공사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건물 완공 이후 해체되거나 철거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 아니어서 부속물이라고 볼 수 없고 완공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, 이 사건 가설재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·합체되었다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히 훼손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어 부합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, ④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가설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설재를 처분한 원고에 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, ⑤ H이 피고를 횡령 및 절도로 고소하자 피고는 수사기관에 '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한 것이지 이 사건 가설재를 함께 매도한 사실이 없다'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가설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가설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가 그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(이 사건 가설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선행 소송을 통해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H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한 결과일 뿐이므로,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가설재 상당액의 '이익'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'손해'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하현국

판사양시호

판사안현진